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8일, 서지영 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제1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2024.11.27.)
상정

제13차 교육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원회,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6.3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7.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지영 의원)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11. 25.)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서지영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조정훈, 서지영, 정성국, 김민전, 김대식 의원)

새로운 교육 기회 박탈과 경쟁력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활용되지 못한 점, 사교육 확대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법안에 유감을 표하거나 보류를 주장하며 대안 마련과 재조정을 요구

(김영호, 문정복, 김준혁, 고민정, 백승아 의원)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법안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책임과 대안 마련,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